

##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

### 심 사 보 고

#### 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12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
- 다. 심 사 기 간 : 2001. 12. 21 ~ 22
- 라. 심사대상 실과소 : 기획예산실외 11개 실과소

#### 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
  - 본 회의 : 기획예산실장
 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: 각 실과소장(세부설명)
- 나. 제안사유
  -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요청 함.
  - 지방재정법 제136조(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등)
  - 지방자치법 제121조(추가경정 예산)
  - 화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(예산안 심사)

### 3. 예산 규모

#### 가. 총괄

(단위:천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비 고
계	170,506,188	169,723,646	782,542	
일반회계	147,258,437	144,863,412	2,395,025	
특별회계	23,247,751	24,860,234	△1,612,483	

#### 나. 일반회계 세입재원내역

(단위:천원)

계	지방세	세외수입	지방 교부세	지방 양여금	제정 보전금	국고 보조금	도비 보조금
147,258,437	13,028,035	14,080,064	69,870,800	15,764,484	1,707,810	20,166,873	12,640,371

#### 나. 일반회계 세출내역

(단위:천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감	비고
계	147,258,437	144,863,412	2,395,025	
일반 행정비	29,499,866	30,206,590	△706,724	
사회 개발비	50,779,332	52,313,524	△1,534,192	
경제 개발비	60,452,001	57,346,921	3,105,080	
민방위비	284,682	290,408	△5,726	
지원및기타경비	6,242,556	4,705,969	1,536,587	

## 라. 특별회계 세입·세출내역

(단위:천원)

구 분	추경예산	기정예산	증 감	비고
계	23,247,751	24,860,234	1,612,483	
주택사업	247,201	247,201	0	
의료보호기금운영	4,872,850	4,861,524	11,326	
상수도사업	11,400,153	11,416,524	△16,358	
농림수산업 진흥기금관리	1,510,920	1,510,920	0	
영세민생활 안정자금	514,864	514,864	0	
농공단지조성사업	2,881,000	4,475,451	△1,594,451	
주차장 사업	1,135,102	1,135,102	0	
내고장 상품권 관리운영	685,661	698,661	△13,000	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 5. 위원회 활동

가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01. 12. 19)

- 위원장 간사 선출의 건
  - 위원장 : 김성인 의원
  - 간 사 : 조영길 의원
-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-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
- 전문위원 검토 보고
- 200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 세부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
  - 기획감사실, 총무과, 재무과, 문화관광과, 사회복지과, 환경과, 농산과, 산림과, 건설과, 도시경제과, 농업기술센터, 보건소

나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01. 12. 20)

- 축조심사
- 항목별 계수조정
- 예산안 심의 확정 의결

다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회의(2001. 12. 21)

-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-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.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
  - 기획감사실, 총무과, 재무과, 종합민원과, 문화관광과, 사회복지과, 환경과, 농산과, 산림과, 건설과, 도시경세과, 농업기술센터, 보건소
- 축조심사

라.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회의(2001. 12. 22)

- 항목별 계수조정
- 예산안 심의 확정 의결

## 6. 심사요지(주요착안사항)

-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

## 7. 심사결과 - 원안가결

-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성질의 사업예산을 정리 추경에 계상하여 이월사업으로 집행하는 것도 지양 할 것이며,
- 우래탄 설치를 위한 공설운동장 조성사업비는 사업종목 재 검토 요망.